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라인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9. 4.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라인

Contents

I	개 요	04
	01. 개념 및 제정배경	06
	02. 아이디어 탈취 판단기준	08
	(참고 1) 아이디어 탈취행위 관련 Q&A	12
II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16
	01.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기업이 유의할 사항	18
	02.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업이 유의할 사항	22
	(참고 2) 아이디어 탈취 예방 · 보호를 위한 단계별 체크리스트	26
III	아이디어 탈취 대응	28
	01. 행정적 구제	30
	02. 민사적 구제	31
	03. 기타 기술보호 관련 제도	32
【부 록】 01. 비밀유지계약서		36
02. 부정경쟁행위 신고서		40
03. 아이디어 · 기술탈취 관련 법령		42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라인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ttp://www.kipo.go.kr>



I

개요

01.	개념 및 제정배경	06
	아이디어 탈취의 개념	06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07
02.	아이디어 탈취 판단기준	08
	법 적용 시점	08
	보호대상 아이디어	08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	09
	제공목적에 반한 부정한 사용	10
	(참고 1) 아이디어 탈취행위 관련 Q&A	12



I 개 요



01

개념 및 제정배경

아이디어 탈취의 개념

- ▣ 아이디어 탈취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의하는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 ▣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 아이디어 탈취 행위는 아이디어를 착안한 자가 들인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부정경쟁행위란?

- ▶ 공업상 또는 상업상의 공정한 관습에 반하는 모든 경쟁행위는 부당 경쟁행위를 구성한다.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10조의2제2호]
- ▶ 영업주체가 사업 활동을 힘에 있어서 정당한 대가의 지불 없이 다른 사람의 경쟁력에 편승하여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행위(황의창, 199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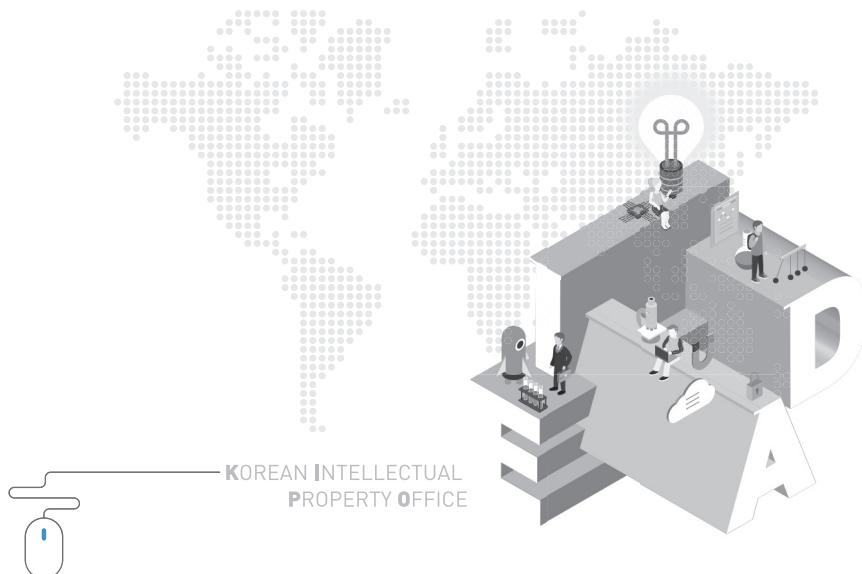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제1호 차목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 ▣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 그 아이디어 개발자의 영업활동 등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정부는 아이디어 제공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2018년 7월 18일부터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특허청에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 부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도록 구제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 ▣ 다만,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아이디어 탈취행위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나 명확한 법해석 기준이 없어 기존의 관행대로 거래할 경우,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기업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크고, 이러한 우려가 확산될수록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되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업도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 ▣ 따라서 특허청은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판단기준, 거래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 유의해야 할 점, 아이디어 탈취 시 대응방법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 ▣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아이디어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02

아이디어 탈취 판단기준

법 적용 시점

▣ 아이디어 제공 시점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일(‘18.7.18) 이전이라 하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아이디어의 사용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 아이디어

▣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대상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입니다.

▣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줄일 수 있거나 업계에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를 의미합니다.

- 또한, 제공 당시의 아이디어가 그 자체로 또는 약간의 변형만으로도 제품을 만들 수 있다거나 영업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수록 경제적 가치가 인정될 가능성성이 높습니다.

▣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그 아이디어를 제공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아이디어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업계에 널리 알려졌을 경우에 그 아이디어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아이디어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업계에 널리 알려졌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널리 알려져 있는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 이유는 동종업계에 잘 알려져 있어서 공공의 영역에 있는 아이디어까지 보호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 ‘동종업계’란 국내외를 포함하여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종사하는 업계를 기준으로 하며, 그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의 의미는 동종업계에서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정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탈취당한 아이디어와 동일한 내용의 특허출원이 공개되어 있다는 것은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졌다고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간접 사실로 고려될 수는 있으나, 특허출원이 공개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는 동종업계의 거래관행, 제공된 아이디어에 대한 접근성, 해당 아이디어와 동일한 아이디어의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

- ▣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탈취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 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 ▣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이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을 포함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의논하고 절충하는 과정 등 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과정 뿐 아니라 계약 이후에 이루어지는 계약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의미합니다.
 - 다만, 일방 당사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한 것은 묵시적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 일반적으로 아이디어 탈취 행위의 경우, 거래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묵시적 거래의사가 확인되면,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거래교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된 경위,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교섭과정,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래, 정형적인 거래형태, 관련업계의 관행, 당사자들의 언행, 당사자들의 계약 성립을 전제한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사업 제안을 위한 1회성 만남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제안 형태가 업계의 관행이라거나 제안 받는 업체에서 만남의 성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묵시적 거래 교섭 과정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제공목적에 반한 부정한 사용

- ‘제공목적에 반한 부정한 사용’은 그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의 동의 없이 제공받은 자 또는 제3자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아이디어의 사용에 관하여 합의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아이디어 제공자를 배제한 채 사업화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아이디어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받은 업체가 상대방과의 계약이나 합의, 동의에 따라 위 정보를 사용한 경우,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아이디어의 ‘사용’이란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자신의 제품 개발, 생산, 판매 등에 활용하거나 영업에 직접 이용하는 것은 물론, 제공 받은 아이디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제3자가 그 아이디어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그 변경의 내용 · 정도, 난이도, 변경에 따른 작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변경하는 데에 제공받은 자의 상당한 노력이 투입되지 않고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아이디어를 일부 변경하여 사용한 행위도 부정한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아이디어를 사용한 자의 주관적인 상황(행위의 반사회성), 객관적인 상황(침해 태양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참고 1

아이디어 탈취행위 관련

**Q.1**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금지하는 제도가 기존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와 대비되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특허권, 디자인권과는 달리 등록하지 않아도 일정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은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치는 대체적인 권리인데 반해,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는 당사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하도급법으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비밀로 관리되어야 하지만,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는 비밀로 관리되지 않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고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아이디어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2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신고할 경우, 제공한 여러 자료 중 상대방이 사용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제공한 자료에는 여러 아이디어들이 포함되어 있기 마련인데, 그 중에서 상대방이 부정하게 사용한 아이디어의 범위를 특정하면 됩니다. 특정한 아이디어의 범위에 따라 상대방의 사용 여부,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탈취여부 판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3

보호대상 아이디어는 기술적인 아이디어만 해당 되나요?

A.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아이디어는 기술적 아이디어에 국한되지 않으며 영업상의 아이디어, 즉 마케팅 전략, 광고방법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포함합니다.

Q.4

보호대상 아이디어는 새롭거나 구체적이어야 하나요?

A. 해당 아이디어가 새롭고 구체적일수록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자신의 등록특허와 동일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자신의 등록특허를 제안한 경우, 특허제도는 물론 아이디어 탈취 조사·시정권고 제도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는 대세적 권리로서 거래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민·형사상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6

타인의 등록특허와 동일한 아이디어를 제3자에게 제안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타인의 등록특허와 동일한 아이디어는 특허법 제94조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독점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보다 특허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등록특허와 동일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Q.7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 중에 제공한 아이디어의 탈취 행위만 보호대상이 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사업의 제안,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경우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 있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Q.8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은 없지만 아이디어를 탈취 당했을 때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이 없더라도 아이디어를 탈취 당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민법상의 불법행위 법리 등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Q.9

타인의 아이디어를 사용하였으나 영업상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에도 아이디어 탈취에 해당되나요?

A.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실제 영업상의 이익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영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10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아이디어 탈취에 해당되나요?

- A.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 정도,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아이디어를 변경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타인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Q.1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아이디어 탈취도 아이디어 개발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입증해야 하나요?

- A. 아이디어 탈취의 경우에는 개발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디어를 상대방에게 제공했다는 증빙자료 등은 상대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12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그 아이디어를 전달한 경우, 그 아이디어를 전달받은 업체도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나요?

- A.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직접적인 거래 교섭이나 거래과정에 있었던 당사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전달받은 것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아이디어가 제공된 경위와 그 목적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부정 경쟁행위에 가담하였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Q.13

동업 관계이거나 소속 직원이 퇴사 이후에 근무 중 알게 된 아이디어를 사용한 경우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해당하나요?

- A.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이 없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만족 할 경우 위의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등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Q.14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업계에 널리 알려졌다는 것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 A.**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Q.15

제안한 아이디어와 동일한 내용의 특허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종업계에 널리 알려졌다고 판단되나요?

-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의 의미는 동종업계에서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정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탈취당한 아이디어와 동일한 내용의 특허가 공개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바로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는 동종업계의 거래관행, 제공된 아이디어에 대한 접근성, 해당 아이디어와 동일한 아이디어의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Q.16

제공받은 아이디어가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여부를 판단할 때, ‘동종업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A.** ‘동종업계’는 같은 종류의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 분야로,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영업주체 간에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여 정합니다.

Q.17

아이디어·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다른 행정기관에 중복신고를 할 수 있나요?

- A.** 예, 가능합니다. 다만, 각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아이디어·기술 탈취제도마다 구성요건, 별침 유무, 이행력의 담보 정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 제도의 구성요건, 피해구제의 용이성 등을 검토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라인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ttp://www.kipo.go.kr>

Financial plan of company development
Table No 16



II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01.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기업이 유의할 사항	18
	제안받은 아이디어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	18
	제안받을 때 유의사항	18
	비밀유지 등 계약 체결 및 준수	19
	제3자에게 유출 금지	19
	제안받은 자료 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 마련	20
	아이디어 탈취 예방 관련 임직원 교육	20
	아이디어 · 기술 증빙과 관련된 제도	21
 02.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업이 유의할 사항	22
	아이디어 제공목적 및 출처 명확화	22
	비밀유지 등 계약 체결 및 준수	23
	계약의 체결 및 권리관계 규정	23
	아이디어 보호 및 관리체계 마련	24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임직원 교육	24
	아이디어 · 기술 보호 제도의 활용	25
	(참고 2) 아이디어 탈취 예방 · 보호를 위한 단계별 체크리스트	26



II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01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기업이 유의할 사항

다른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정한 의도로 사용하여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에 따른 분쟁 등의 발생으로 기업 이미지의 훼손은 물론 장기적으로도 기업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아이디어·기술을 제공받는 기업은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따르는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대가 지급 또는 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안받은 아이디어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

- ▣ 아이디어를 포함한 정보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사업화·저작권·특허권 등 지식재산 권리화 및 귀속문제 등을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안받을 때 유의사항

- ▣ 다른 기업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제안받은 경우, 해당 아이디어와 유사한 기술 또는 영업전략 등이 社內에서 개발 중이거나 개발계획이 있는지 여부, 유사한 내용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등을 관련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 ▣ 社내에 이미 그와 유사한 기술 또는 영업전략이 있거나 개발 중(예정)인 사실이 확인되면, 제안한 업체에 이를 알리고, 거절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거나, 필요하다면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제안받은 정보가 개략적이어서 세부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社내 관련부서 담당자와 함께 제안자를 만나서 기술 또는 영업전략의 유사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제안받은 아이디어와 유사한 기술 또는 영업전략이 社내에 없어서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사업화하거나 제품화할 의사가 있다면 최소한의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밀유지 등 계약 체결 및 준수

- ▣ 비밀유지계약은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의 정보유출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받는 기업에서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전달 받을 수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 비밀유지계약은 어떠한 정보를 비밀로 규정할지, 아이디어의 제공 목적, 비밀유지의무, 비밀유지 위반시 대응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추후 발생가능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시 고려사항

- ✓ 비밀정보의 정의
- ✓ 제공목적
- ✓ 비밀유지기간
- ✓ 비밀유지의무 및 임무
- ✓ 비밀유지위반 시 대응방안
- ✓ 분쟁시 해결방안

* <부록 2> 비밀유지계약서 서식 참고

- ▣ 아이디어 제공자와 제공목적을 명확히 합의하고, 제공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며, 제공 목적 외의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대가 지급 등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3자에게 유출 금지

- ▣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상대기업에게 제공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에게 유출 또는 공유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민법상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 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공받은 아이디어의 보안 유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제안받은 자료 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 마련

- ▣ 다른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는 내부 관리규정을 갖추고 관리하도록 합니다.
- ▣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받을 때, 제공받은 정보의 관리방법, 폐기 절차 등의 기준을 갖추고 직원들에게 업무처리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부규정 제정 시 고려사항

- ✓ 아이디어를 제안받을 때 유의사항
 - 社内 유사한 기술(영업) 아이디어 개발계획, 관련 특허·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보유여부 확인
 - 미팅시, 개발관련 부서 담당자와 동석하여 社内 유사 기술(영업전략) 보유 여부 등을 확인
 - 거절할 경우, 명확한 거절사유 등을 포함한 확인서 작성
- ✓ 아이디어를 요청하는 방법
 - 요청 범위, 요청방법, 비밀유지계약체결 등
- ✓ 제공받은 아이디어 관리 방법
 - 보관방법 및 기간, 관리책임자, 접근권한, 폐기절차 등
- ✓ 분쟁발생 시 대응방안
 - 보고체계, 처리절차 등
- ✓ 내부규정의 임직원 공유 방법
- ✓ 제안받은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 유의사항
 - 비밀유지 또는 제공목적 범위 내 사용 등 계약체결 및 정당한 대가 지급

아이디어 탈취 예방 관련 임직원 교육

- ▣ 제안받은 아이디어를 관리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했다면 해당 내용을 정기적으로 임직원들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아직 내부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 특히, 거래교섭, 계약체결 등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들의 경우 내부규정 및 관련 법규 등에 대해 더욱 자세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임직원 교육

- ✓ 교육대상 : 전체 임직원
- ✓ 교육내용
 - 정보요청 방법, 비밀유지계약 체결, 관련 법령(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기타 중소기업기술보호 제도 및 관련 법령)
- ✓ 시 기 : 연간 교육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시행(신입사원의 경우 입사교육 시)

아이디어 · 기술 증빙과 관련된 제도

 타인의 아이디어 · 기술 정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와 동일한 아이디어 · 기술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 특허권 확보,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기술임치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란?

보유한 영업비밀 원본의 전자지문(해쉬값)만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와 소유자,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비스



[참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전자지문)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원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02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업이 유의할 사항

아이디어의 탈취는 제품 등(기술적 또는 영업상 아이디어가 포함된)을 소개하는 단계나 계약 이전의 단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 입장에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상대기업이 기술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개인)은 자사(자신)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 제공목적 및 출처 명확화

- ▣ 거래교섭 과정에서 아이디어 제공 목적 및 출처, 수신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 또는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 ‘거래교섭 과정 또는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가 제공’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의 제공 목적, 수신자, 제공자, 일시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만, 기록의 진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 자료 제공 시, 해당 자료가 당사의 자산임을 분명히 하고, 도용 및 유출 시 대응에 대한 내용을 표기하는 것이 좋고, 수신자에게 동일한 내용을 고지하고 서명을 받아둘 수 있다면, 아이디어 탈취로 인한 분쟁의 예방 및 분쟁 발생 시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아이디어(정보) 제안서, 문구삽입 예시

제안서 PT 및 제출서류 마지막에 ‘본 제안서에 포함된 아이디어를 제안자의 동의 없이 수령하는 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를 위해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합니다’라는 취지의 문구 삽입

비밀유지 등 계약 체결 및 준수

- ▣ 비밀유지계약이나 제공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이디어 제공에 따르는 유출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 거래교섭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부득이하게 상대방에게 공개할 수밖에 없을 경우,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계약이 체결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제공된 아이디어를 다시 회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 ▣ 따라서 거래교섭 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계약상 의무로 명시하고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거래교섭 당사자들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시 고려사항

- ✓ 비밀정보의 정의
- ✓ 제공목적
- ✓ 비밀유지기간
- ✓ 비밀유지의무 및 임무
- ✓ 비밀유지위반 시 대응방안
- ✓ 분쟁시 해결방안

* <부록 2> 비밀유지계약서 서식 참고

계약의 체결 및 권리관계 규정

- ▣ 업계의 관행 등을 이유로 구두로 확약만을 받은 경우, 상호신뢰가 떨어지고, 그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교섭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제공한 아이디어 및 그 아이디어를 통해 창출한 결과물의 귀속, 처분, 수익분배 등에 관한 기준을 상호간에 합의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귀속과 사용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 공고문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공할 업체에 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문의하여 답장을 받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아이디어 보호 및 관리체계 마련

- ▣ 자사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 거래교섭 또는 계약체결 진행 단계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을 달리하거나, 정보제공 사실을 증빙하는 방법, 아이디어의 제공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부규정 제정 시 고려사항

- ✓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방법
 - 제공범위, 제공방법, 비밀유지계약체결 등
- ✓ 아이디어 관리
 - 보관방법 및 기간, 관리책임자, 접근권한 등
- ✓ 분쟁발생 시 대응방안
 - 보고체계, 처리절차 등
- ✓ 내부규정의 임직원 공유 방법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임직원 교육

- ▣ 아이디어 등을 포함한 중요 정보에 대한 관리 · 보호방안에 대해서 임직원 대상 교육은 입사 시부터 퇴사 시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이러한 교육의 시행으로 인해 아이디어 탈취 빙도와 강도를 현저히 낮출 수 있고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시] 임직원 교육

- ✓ 교육대상 : 전체 임직원
- ✓ 교육내용
 - 정보제공 방법, 비밀유지계약 체결, 관련 법령(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기타 중소기업기술보호 제도 및 관련 법령)
- ✓ 시 기 : 연간 교육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시행(신입사원의 경우 입사교육 시)

아이디어 · 기술 보호 제도의 활용

- ▣ 아이디어 · 기술 정보의 유출 및 도용에 대해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으나, 막대한 시간 · 비용 소요, 피해 입증 곤란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렵고, 이미 해당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따라서 사전에 아이디어 · 기술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행동요령 외에도 특허권 확보,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 기술임치 등의 제도를 통해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련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란?

보유한 영업비밀 원본의 전자지문(해쉬값)만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와 소유자,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비스



Tech Safe 시스템이란? (<http://ts.kibo.or.kr>)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제도) 거래제안 과정에서 구두 또는 유선상으로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 받는 정황과 송부내역을 등록하는 제도

(기술임치제도) 기술자료를 제3기관에 보관해 기술유출이나 특허 논란이 생겼을 때 기술개발과 보유 사실을 입증해주는 제도



[참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전자지문)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원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참고 2

아이디어 탈취 예방·보호를 위한 단계별 체크리스트



▲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기업

단계	내용	체크
제안 수령	제안받은 아이디어와 유사한 내용의 기술이나 특허권 등 관련기술의 社內 보유·개발계획 여부 등 확인	
	기존 거래하던 다른 업체로부터 제공받았던 자료와 아이디어·기술의 동일성 여부 등 확인	
	사용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도 제공가능한 정보인지, 본인의 아이디어가 맞는지 등을 제공자에게 확인	
	입찰, 공모 시에 제안받은 아이디어의 보호 및 사용에 관해 필요한 안내문구 사전고지 여부 확인	
제안 거절	아이디어의 개략적인 내용이 이미 내부에서 개발 중이거나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그 사실을 사유로 거절의사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서면으로 전달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안받은 경우, 社內 관련부서와 함께 검토해서 거절하기로 결정했다면 거절 사유·의사를 전달	
제안 수락	아이디어의 개략적 내용을 검토한 결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 거래과정 중에 제공되는 아이디어에 대해 상호 비밀유지 및 제공목적에 반하는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 제공받은 아이디어가 이미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졌음이 밝혀지면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제소할 수 없음을 고지	
계약 체결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계약 체결 * 제안 정보 특정, 사용의 목적·범위, 권리화 및 권리귀속, 대가 지급, 사업화 조건, 분쟁 발생시 책임 등을 기재	
상시 관리	임직원에게 상대방의 아이디어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	
	타 업체에 자료 요청 범위·방법, 제공받은 자료 보관 방법·기간 등에 관한 내부 규정 마련	
사후 대응	아이디어 제안자가 탈취행위라고 언론보도 등으로 문제제기할 경우, 내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및 신중 대응	

▲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업

단계	내용	체크
제안 이전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상대방이 내부적으로 개발 중이거나 알고 있는지 등을 확인	
	제공할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를 제공하기 전에 확인	
제안 과정	거래를 하고자 하는 업체에만 제안	
	최초 제안시, 아이디어가 포함된 최소한의 자료 제시	
	상대방이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입증자료 보관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자·목적·제공자·수령자 등 기록	
	거래관계 또는 거래과정 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문자기록 등 보관	
계약체결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전, 상대방에게 비밀준수 및 제공목적에 반하는 사용을 금하는 확인서·비밀유지 계약 등 체결	
	상대방이 확인서·비밀유지계약 등을 거부하면 거부사유 등을 기재한 자료 보관	
상시 관리	아이디어의 사용 관련 계약체결 * 제안 정보 특정, 사용의 목적·범위, 권리화 및 권리귀속, 대가 지급, 사업화 조건, 분쟁 발생시 책임 등을 기재	
	기존 거래처가 계약서에 명시된 자료 외 추가적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될 경우, 해당 정보 제공의 대가 등을 계약서에 반영	
	상대방이 요청한 자료 목록, 제공한 자료 목록 관리	
사후 대응	아이디어 등을 포함한 중요 정보 관리·보호방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임직원 대상 교육 실시	
	특허권 확보,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 기술임차제도 등의 보호 제도 활용	
	거래교섭 또는 계약체결 진행 단계별로 제공하는 아이디어의 범위 및 제공 방법 등에 대한 기준 마련	
사후 대응	부정경쟁행위는 특허청에 신고, 특허권·저작권 등 침해는 경찰·특허청·저작권위원회 등에 신고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라인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ttp://www.kipo.go.kr>



III

아이디어 탈취 대응

01.	행정적 구제	30
	부정경쟁행위 조사 · 시정권고 제도	30
	조사절차 및 신고방법	30
02.	민사적 구제	31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31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청구	31
03.	기타 기술보호 관련 제도	32
	영업비밀보호제도	32
	중소기업 기술탈취 보호 제도	33
	하도급관계 기술탈취 보호	33

III 아이디어 탈취 대응



01

행정적 구제

부정경쟁행위 조사 · 시정권고 제도

 아이디어의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특히 등의 권리 등록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디어를 포함한 정보가 탈취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허청의 부정경쟁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조사절차 및 신고방법

| 특허청 아이디어 탈취 조사 절차 |



상담 및
신고 접수



인터넷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www.patent.go.kr:7078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 전화 042-481-5190
- 팩스 042-481-8257
- 이메일 jyg2743@korea.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

- 전화 02-2183-5837
- 팩스 02-2183-5899
- 이메일 5837@koipa.re.kr

02

민사적 구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 아이디어 탈취 행위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또는 이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청구

- 아이디어 탈취로 인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03

기타 기술보호 관련 제도

영업비밀보호제도

-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 영업비밀보호제도는 이러한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고, 새로운 기술 및 경영정보의 연구와 그 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 ✓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이어야 함
- ✓ 경제적 유용성
기술상·경영상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함
- ✓ 비밀관리성
비밀관리를 위하여 일정 노력을 기울여야 함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 민사적 구제 : (부정경쟁방지법) 침해행위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폐기 또는 제거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
- ✓ 형사적 구제 : (부정경쟁방지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초과시 재산상 이득액의 2배내지 10배 이하의 벌금)
(형법)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
(국외유출의 경우 가중)



영업비밀보호센터

- ✓ 영업비밀 보호교육
- ✓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 영업비밀유출분쟁 법률 자문 등



운영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666-0521)

중소기업 기술탈취 보호 제도

구 분	지원 내용	운영기관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비밀의 보유사실과 시점 추정 및 원본을 사외 반출없이 이용가능하게 하여 원본유출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 	한국자식재산보호원 1666-0521
기술보호통합·상담신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유출 관련 상담 및 신고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 · 자문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정책사업 안내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02-368-8787
기술자료임차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 발생 시 임차한 기술에 대한 보유 사실 입증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02-368-8787
기술유출방지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가능성을 진단하고 대책을 설계하여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 시스템 구축 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3489-7052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에서 보유한 PC, 서버에 대한 온라인 해킹시도를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신속히 조치 · 대응 취약점 분석을 통해 보안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서비스 지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02-3489-7050

하도급관계 기술탈취 보호

 하도급법에서는 수급사업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라인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ttp://www.kipo.go.kr>





부 록

- | | |
|-----------------------|----|
| 01. 비밀유지계약서 | 36 |
| 02. 부정경쟁행위 신고서 | 40 |
| 03. 아이디어 · 기술탈취 관련 법령 | 42 |

부 록



01

비밀유지계약서

※ 본 서식은 표준서식으로서 사용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서식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비밀유지계약서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아 래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와(과) ○○가(이) (_____업무요지 기재_____) (이하 ‘본 업무’라 함)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제공한 비밀정보에 대한 보호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포함한 정보를 말한다.
-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아이디어,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등 모든 기술상 혹은 영업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 ③ 본 계약서 체결 전에 □□ (또는 ○○)이 이미 본 계약서와 관련 없이 입수 하였거나, 이미 널리 알려져 공표된 아이디어 및 정보는 예외로 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

-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 (‘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 본 서식은 표준서식으로서 사용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서식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제4조 (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각 당사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비밀유지)

-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락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서식은 표준서식으로서 사용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서식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제6조 (자료의 반환)

-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제7조 (권리의 부존재 등)

-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 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효력 및 유효기간)

- ① 본 계약서의 효력은 □□과 ○○이 서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기간)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위반에 대한 책임)

-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위약벌로서 금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본 서식은 표준서식으로서 사용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서식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내용의 변경)

-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 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여 합의로 이를 해결한다.
- ②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정하고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회사명) 주식회사 □□

(주 소) _____

(대표자) _____ (인) _____

(회사명) 주식회사 ○○

(주 소) _____

(대표자) _____ (인) _____

02

부정경쟁행위 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신 고 서

1. 신고인 인적사항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현주소			e-mail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조항 : 제○조 제○호 ○목

3. 신고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사실관계)

성명, 상호, 상표 등	
상 품	
법위반 사항 (사실관계)	
기타 필요사항	* 첨부자료 참고

4. 피신고인 인적사항

업 소 명		대표 성명	
주소 또는 업소소재지		전화번호	

5. 피신고인과의 관계 : * 예) 하청업체 등

6. 기타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는 별도 붙임으로 정리 후 제출 요망

신고인은 위의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서명 또는 인)

특 허 청 장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부정경쟁행위 유형별 조사 참고자료 (제출용)

VII. 제2조 제1호 차목(아이디어 탈취행위)

1. 신고인 관련사항 작성

가. 아이디어 제공자

1) 성명(상호) :

2) 전화번호/이메일 : (※ 조사관과 실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

나. 제공한 아이디어 분야 : 예) 제품, 서비스, 기술 등

다. 상표, 디자인, 특허 등 출원 여부 :

라. 신고인이 착상한 아이디어임을 증명할 서류(개발 및 연구 등 관련 자료) 제출

마. 거래 관계(사업제안, 입찰, 공모전 등)임을 증명할 서류 제출

바. 피해 사실관계(아이디어 제공시기, 제공 형태 등 포함) 및 기타 침해관련 과정 등을 증명할 서류 제출

사. 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신고 여부

아. 신고와 관련한 특허청 이외 기관에서의 진행 사항 : 예) 특허 심판, 민사, 분쟁 조정 등

자. 피신고인에게 바라는 사항 :

2. 피신고인 관련사항 작성 (* 인지한 범위 내 작성, 증명서류 또한 가능한 범위 내에 제출)

가.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

1) 성명(상호) :

2) 전화번호/이메일 :

나. 아이디어가 사용된 분야 : 예) 사용된 제품, 서비스, 기술 등

다. 아이디어 사용 시기를 증명할 서류 제출

라. 피신고인 아이디어 사용여부를 증명할 서류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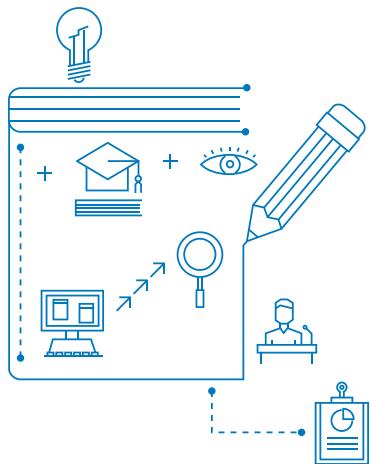
마. 피신고인의 해당 아이디어 적용 분야 매출액, 기업규모 등 증명할 서류 제출

3.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목적에 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 이유 (* 인지한 범위 내 작성)

03

아이디어·기술탈취 관련 법령

구분	주요 보호대상 및 내용	주무부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 영업비밀 보호 	
발명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발명제도 • 사용자에 의한 직무발명 권리 승계와 직무발명 보상 	특허청
특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 산업 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포함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술보호에 관한 지원 정책 • 분쟁조정·중재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 관계에서 기술자료 유용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이 개발한 핵심기술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료 임치제도(기술탈취 방지) •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금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기업·연구소·대학) •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수출승인(신고) • 산업기술의 부정 취득 등 금지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안보와 관련된 외국인투자 제한 	
산업발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적 가치가 높은 중요한 기술을 개별 법률의 목적에 따라 보호 	
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도죄, 업무상 배임·횡령죄, 증거 인멸죄 등 	법무부
저작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문화체육관광부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라인

발행일 2019년 4월

발행처 특허청

기획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조사과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http://www.kipo.go.kr>

